

「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○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(안 제4조)
 -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 교육 위탁가능함 명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위탁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